

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

제도소개

<관련법률 : 「국민연금법」 제100조의4>

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가 다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.

지원 사업의 재원은 100% 국가에서 지원합니다.

지원금액(2023년 기준)

- 납부재개 시
신고소득 100만원 이하 > 월 보험료 50% 지원
- 납부재개 시
신고소득 100만원 초과 > 월 45,000원 지원

“생애 최대 540,000원”을 지원합니다.

지원방법

연금보험료 중 50%(최대 45,000원)를 국가가 부담

-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.

예시 : 납부재개 시 월 100만원으로 소득 신고할 경우



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(요약)

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

지원대상	지원금액	지원기간
농어업인 지역(지역임계)가입자	보험료의 50%	제한없음

· 월 최대 46,350원(기준소득월액 103만원인 경우)

실업크레딧 지원

지원대상	지원금액	지원기간
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	보험료의 75%	생애 최대 12개월

· 월 최대 47,250원(인정소득 70만원인 경우)

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

지원대상	지원금액	지원기간
경제적 사유(사업중단, 실직, 휴직)로 납부예외 중에 납부재개한 지역가입자	보험료의 50%	생애 최대 12개월

· 월 최대 45,000원(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인 경우)

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
농어업인 지원 및 실업크레딧과
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
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국민연금 홈페이지 | www.nps.or.kr
*가까운 지사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!
국민연금 고객센터 | 국번없이 1355(유료)



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안내

‘농어업인 · 지역가입자’

고객센터 | 국번없이 1355(유료)
홈페이지 | www.nps.or.kr



농어업인 보험료 지원

제도소개

<관련법률 : 「국민연금법」 시행령 제57조>

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.

재원 :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

지원금액(2023년 기준)

-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
- 신고소득 103만원 이하 > 월 보험료 50% 지원
- 신고소득 103만원 초과 > 월 46,350원 지원

“연간 최대 556,200원”을 지원합니다.

지원방법

연금보험료 중 50%(최대 46,350원)를 국가가 부담

-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.

예시 :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103만원인 경우



농어업인 지원 대상

☺ 지원대상

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「농어업인 인정기준」 해당하시는 분

농어업인 인정기준

-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,
- 농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,
- 1년 중 90일(60일) 이상 농(어)업에 종사하시는 분

※ **잠깐!**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,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경우

-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
-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분

보험료 지원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위의 제외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환수되므로 반드시 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어업인 지원 신청 방법

"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은 증빙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**전화로 지원신청** 하세요"
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은 농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☰ 제출서류

'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'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- 1 시장·구청장·읍장·면장의 확인을 받은 후
- 2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제출해 주세요

확인서 서식은 홈페이지(www.nps.or.kr)에서 다운로드 하시거나, 국민연금 고객센터(국번없이 1355 유료) 전화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'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' 대신에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셔도 됩니다.

농업인

- 농지대장
*1,000㎡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- 축산업등록증(허가증)
- 가축사육업등록증 (축종과 면적요건 충족해야함)
*소사육업은 300㎡, 양돈·양계·오리사육업은 50㎡ 초과

어업인

- '수산업법', '내수면 어업법', '양식산업발전법'에 의한 증명서류
- 어업허가증, 어업면허증, 어업신고증명서, 어업권원부 등

지역가입자 지원 대상

☺ 지원대상

지역 납부예외자인 국민 중 「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」에 해당하시는 분

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

- 대한민국 국민인 지역가입자 (18세 이상 60세 미만),
- 경제적 사유(사업중단, 실직, 휴직)로 납부예외 중이신 분
-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☺ 제외대상

지역 납부예외자로서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지원제외 조건

- 종합소득*이 1,68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
* 사업,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을 의미합니다.
- '실업크레딧' 또는 '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'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(종로 시 지원신청 가능)

지역가입자 지원 신청 방법

☰ 제출서류

- 1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
 -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+ 확인서
- ※ ① 납부재개신고서 제출 후 보험료 지원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
② 신청서 + 확인서만 제출

📍 신청절차



- 1 전화, 방문, 우편, 팩스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
* 전화 접수일 경우 신청서 접수 생략 가능
- 2 신청하신 분들의 지원요건 확인
- 3 지원요건 확인 후 지원 여부에 대해 개별 통보
- 4 지원대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시작

💬 당부말씀

-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(국번없이 1355 유료)를 통해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* 단,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신청은 지원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전화 접수가 어려울 경우, 가까운 지사로 방문, 우편, 팩스를 통해 지원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지원신청 과정에서 지원신청하신 분의 재산,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관련 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.